

임 치 계 약 서

임치인: 0 0

주 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수치인: ○ ○

주 소: 00시 00구 00길 00

임치인 ○ ○ ○(이하 '갑'이라 칭함)와 수치인 ○ ○ ○(이하 '을'이라 칭함)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치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임치계약의 약정) '갑'은 그가 소유하는 아래 물품을 제2조 이하의 내용에 따라 '을'에게 임치하고, '을'은 이를 보관할 것을 수락한다.

〈아 래〉

가. 물 품 명: 0000

나. 수 량: 0개

제2조(보관기간): 20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20○○년 ○월 ○까지

제3조(보관장소)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제4조(보관비용지급) 임치물품의 보관비용은 금 ○○○원으로 정하고 '갑'은 매월 ○일까지 그 익월 분을 수치인 '을'의 주소에 지참하여 지급한다. 단, 본 계약성립의 ○월분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지급키로 한다.

제5조(계약의 해지) '을'은 '갑'이 제4조에 의한 보관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,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6조(계약의 종료)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경우 이외에 '갑'이 사망하거나, 금치산, 파산의 선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본 계약이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임치인의 의무)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'갑'은 신속히 보관소재지를 변경하는 절차를 마치고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. 만일 '갑'이 물품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정보관료상당의 손해금을 '을'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치인의 의무)

- 가. '을'은 '갑'이 보관을 의뢰한 물품의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용 있다.
- 나. '갑' 또는 '갑'의 사용인 및 그 지정인은 전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수시로 보관장내에 출입할 수 있다.
- 제9조(통지의무) '갑'과 '을'이 보관계약의 기간내에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 구두나 서면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한다.
- 제10조(보증인의 책임) '갑'의 보증인은 '갑'과 연대하여 본 계약에 기인한 '을'에 대한 채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- 제11조(성실의무등) 본 계약의 해석운영에 관한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본 계약의 규정에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협력하며 상관습 등에 의하고, 법적분쟁 발생시 소송법원은 '을'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 서명·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00년 0월 0일

임	주	소	
치 인	성	명	인 <mark>주민등록번호 </mark>
수 	주	소	
치 인	성	명	인 <mark>주민등록번호 </mark>
연 대	주	소	
보증인	성	명	인 <mark>주민등록번호 전 화</mark> 번 호